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27 선고 2018가단6530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9. 5. 30

판결 선고 2019. 6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80,394,520원 및 그 중 80,000,000원에 대하여 2018. 11. 12.부터 2019. 4. 4. 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 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영풍